

위기의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현 단계 — 전쟁과의 단절을 위해서

정태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50여 년 전 치명적인 전쟁을 겪었으면서도 아직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 자체도 아직 종식되지 않고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새로운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한 축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 이미 수교를 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들 나라들과는 '공고한 평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다른 축이며 보다 핵심적인 북미 그리고 남북의 상호관계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는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채택과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으로 '공고한 평화상태'(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표현)로 접근하였으나, 남북의 법제에서 그 점은 아직 확실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예컨대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남은 '잔여 영역'에서만 유효할 따름이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아직 탈냉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부는 NLL 문제조차도 아직 평화공존의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주적규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6·25 전쟁을 여전히 민족해방전쟁으로 신성시하고 있으며 지금도 자신들의 강성대국 노선이 미 제국주의로부터 남한까지 보호해주고 있다고 흰소리를 한다. 또 전쟁 발발시 남한도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며,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한 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가 불길하다. 북한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단지 6.25 전쟁의 미종료라는 차원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전쟁위기의 전개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것이다. 소위 '북핵위기론'이다. 북한과 미국은 그 문제로 인하여 이미 1994년 전쟁일보직전까지 갔었다. 카터의 방북의 성공과 제네바합의의 타결로서 위기를 일단 넘기기는 하였으나, 북미간의 불신과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제네바합의의 타결 직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클린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며, 제네바합의를 흔들어들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적대정책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맞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미의 긴장관계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취함으로써 호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윌리엄 페리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면서 북한과 미국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고도의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부시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이러한 성과는 모두 무효화되었다. 9.11테러로 경색된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후 북한을 포함하여 7개 나라에 대하여 핵 선제 사용의 국가전략을 공개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인식하였다. 2002년 미국은 마침내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을 추궁하였고, 북한도 그에 맞서 NPT에서 완전 탈퇴하고 IAEA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사태는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었다.

다행히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이 성사되고, 이어서 8월에 6자회담이 열려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다. 북한은 6자회담 기초연설의 첫머리에서 자신들의 목표는 핵무기의 보유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공언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주장하는 농축우라늄의 핵개발 의혹에 대하여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측의 완화된 태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미국의 호응도 신통치 않았다. 미국은 국무부 라인의 온건한 방안들에 대하여 계속 변죽을 울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해야 한다는 완강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나아가 미 강경파는 북한의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6자회담을 단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장으로만 활용하려 들고 있다.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전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제2의 한국전쟁을 경고하였고(USA Today 인터넷 판 2003-09-01), 중국 군사전문잡지 ‘함선지식’(艦船知識) 10월호에서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게재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송고일 2003-10-19).

정전 50주년이 되는 2003년 다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우리 민족의 서글픈 처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50여 년 전의 한국전쟁이 그랬듯이, 지금의 위기상황도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이다. 6.25 전쟁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느 일방의 침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에도 모두가 전쟁불사를 외치는 형국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당사자들 모두가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더 낫다.”는 에라스무스의 명제에 소홀한 듯하다.

그리하여 이 글은 다시 한 번 전쟁불가라는 규범적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많지만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가 여겨진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불사론의 허구성과 전쟁에 대한 규범적 관점을 확고히 하여 전쟁과의 단절과 평화의 지향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불사(戰爭不辭)론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보통 ‘북핵위기’라고 불리고 있지만, 문제의 발단은 북미간의 대립과 그에 따른 북한의 안보우려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6·25 전쟁 당시 이미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는 주한미군은 다양한 전술 핵무기로 무장하게 되었다. 1976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틴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에게는 핵공격의 군사연습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다.(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2003, 311쪽). 북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계획에 시동을 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 CIA의 첩보위성에 포착된 원자로를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길산, 2002, 379쪽)

특히 북한은 냉전해체의 시기에 들어 오히려 더욱 고립되고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소련과 중국이 차례로 한국과 국교를 맺은 것은 북한의 “상시 포위 심리(permanent siege mentality)”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안보우려에 대한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국가역량이 계속 뒤 처지고 있던 북한 정권에게 핵은 어쩌면 최후의 생존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197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과 미중 화해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명운을 걸다시피하며 핵개발에 나섰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는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핵무기 비확산의 체제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테러의 위험을 극도로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히틀정책의 파트너였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조차 북한이 영변 핵 재처리를 완료한다면 미국은 전쟁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현재로서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언제라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즉 대북 군사적 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다. 2003년 5월 노무현-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모든 옵션’을 주장하였는데,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자고 주장하여 겨우 ‘추가적 조치’란 말로 봉합되었다.

현재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위기는 무엇보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불사론’에서 기인한다. 이른바 선제방어전쟁론(preemptive war; preemption)이다. 이는 2002년 이른바 부시 독트린으로 공개 천명된 후, 이라크 전쟁에서 실증된 바 있다. 선제적 방어전쟁은 이른바 예방전쟁(preventive war)과 구분하여 선제공격을 ‘방어’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이 용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의 추축국(axis of power)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세계의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부시 독트린은 미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니

다.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인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는 대담하게도 지난 8월 초 6자회담의 합의가 발표된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북한의 핵 재처리 및 ‘축구공’만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불량국가, 테러단체 이전 가능성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사공격을 포함한 한반도 제2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시의 전쟁불사론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다. 군사력 사용시 제2의 핵시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변에 대한 국지적 폭격에 국한되지 않는 군사력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반격하더라도 비무장지대 인근 1만1천문의 북한군 방사포는 한미 양국의 압도적 공군력과 정밀무기 등을 통해 격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이지스함, 항모전단 및 수 개의 공군 비행단 등의 즉각적인 한국 파견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이들은 한미 양국군은 DMZ에 북한군이 집중된 만큼 평양과 원산에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도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및 방사포 등의 위치를 정확히 감시하기 위한 감시항공대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시의 추정으로는 현대화된 한국군 및 미군의 능력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30-60일이면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선제방어전쟁론’은 단지 제한적인 선제타격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강경파들은 선제적 방어라는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북한 정권교체라는 근원적인 해법으로 가고 있다. 북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단지 핵무기라는 현상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핵폐기가 아니라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며, 이들의 전쟁불사론은 단지 ‘선제방어전쟁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전쟁론’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론’ 내지 ‘인도적 개입의 전쟁론’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미 정부의 강경파를 대표하는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북한 정권교체론을 제기하여 대화기조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이 성사될 당시 럼스펠드는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메모를 들렸으며, 7월 말 6자회담의 성사를 앞두고 볼튼은 한국에까지 와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악담을 퍼부어 댔다. 앞서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울시도 또한 2003년 8월 25일 방한하여 “그 동안 김정일 정권이 여러 번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김정일 체제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된 예방 전쟁론’은 단지 방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복무한다고 하는 명분까지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애초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문제삼아 선제적 방어전쟁으로 얘기하다 그 증거가 뚜렷하지 않자, 이라크 민중의 해방과 독재의 청산이라는 명분을 다시 내세운 바도 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불사론을 옹호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 역시 북한 민중의 해방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심각한 까닭은 이러한 미국의 호전적 태도에 대하여 북한도 전쟁불사론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예컨대 미국의 제재나 봉쇄를 선전포고 간주하겠다고 하며, 이른바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전쟁불사론의 호전성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전쟁으로 비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994년의 위기 상황이 그랬다. 카터가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하던 때, 미 백악관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남한에 대한 미군 병력증가를 결정하려 할 찰나였으며, 북한을 그것을 전쟁의 신호(signal)로 파악할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많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의 선제적 방어전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이트 북한은 미국의 병력증가를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당시 레이니 대사와 렉 주한 미군사령관은 비밀리에 미국인들의 소개(疏開)작전에 돌입하였다.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에 어떤 참화를 가져다줄지 예상할 수조차 없다. 돈 오버도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얘기하고, 피터 헤이즈는 ‘크라카토아(Krakatoa)의 폭발’을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조차 전쟁불사론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전 CIA 국장 울시의 추정대로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군은 쉽게 제압될 수 있으며, 큰 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군부의 태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1994년의 전쟁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취했던 태도에 비추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전쟁위기가 급박하게 전개되던 6월 8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그 동안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의존해왔던 종전의 자세와는 달리 앞으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결연한 자세와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세계일보] 1994-06-09)

이어서 이병태 국방장관은 6월 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대북제재가 시행될 경우 국지적 충돌이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미 증원군의 신속한 지원과 국민의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에 더하여 이장관은 전쟁 발발시 심리적 공포와 단전 단수 등에 대한 대책을 관련부처와 협조해 강구중이라고 까지 덧붙였다.([조선일보] 1994-06-10)

Ⅲ. 전쟁의 유연성과 비극성

물론 앞의 전쟁위기론과 달리 전쟁의 현실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 시각도 적지 않다. 클라크 소렌슨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은 확실하지도, 신속하지도,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에서 행한 것과 같은 첩보활동을 하지 못해 북한의 대공 방어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또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은 주요 시설의 위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변에 대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북한의 핵무기와 재생산된 플루토늄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또 북한은 서울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군까지 포함한 전면적 군사작전만이 부시 행정부 매과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결국 “신속하고 값싸고 분명해야 하는” 전쟁정치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동아일보] 2003-06-13)

[2010년의 한국 . 새 천년의 과제]의 저자인 폴 챔벌린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위협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챔벌린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기회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잃게 되며, 중국은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1차 공격만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와 로켓 등을 모두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동장비를 갖춘 수천 개의 군사목표를 모두 없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는 부정했다.([연합뉴스] 송고일 2003-07-29)

혹자는 심지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한다. 일본의 릿쿄대 이종원 교수는 “미국 내 일부 강경파의 자신에도 불구하고 대북 군사행동의 정치적 결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대북 교섭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붕괴도, 군사행동도, 교섭도 아닐 경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부시 정권의 ‘맞춤형 봉쇄정책’ ‘적대적 무시’라는 모호한 전략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의 핵 확산을 묵인 내지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한겨레신문] 2003-03-05). 이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세계전략이 중국 봉쇄에 맞추어져 있다면,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반드시 미국의 구도에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국의 전쟁불사론은 실제로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책략, 혹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위한 구실, 또는 이라크, 이란 등 중동문제에 보편성을 가미하게 위한 패키지 활용, 나아가 동북아의 신질서의 구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전쟁불사론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 내부적인 체제 위기를 호도하고, 국민들의 총화단결을 통하여 정권을 지속하고, 미국에 맞서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하기 위한 술책일 뿐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할 듯하다.

사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누차 밝히고 있으며, 남북의 교류와 왕래도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적으로 거의 공인된 합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전쟁의 위기를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가상의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터지기도 한다. 1994년의 전쟁위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와 불신이 빚은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미국무부의 찰스 카트먼은 이것은 두 나라가 실수하여 돌입하게 되는 전쟁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리언 시절,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1999, 167쪽). 호전성의 상승작용은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전쟁의 불꽃을 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두 차례 교전을 겪었던 서해 북방한계선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대규모의 전쟁으로 비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미국의 정찰비행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근접 경고비행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대규모의 탈북사태를 조장하려는 정책을 취하는 것도 상서로운 일은 아니다.

끝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앞서 일종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았는데, 교조주의적인 네오콘들은 북한의 강제적 정권교체의 전쟁을 감행할 가치가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겠지만, 결코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경우와는 처지가 판이한 것이다. 미국은 그야말로 정치의 연장으로 또 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을 감행할 만한 것이다.

또한 설사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다고 하여도 전쟁의 참화를 결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 전쟁은 ‘인권에 지옥의 문을 연다.’고 한다. 전쟁은 아무리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인간사에서 가장 비참한 일임에 틀림없다. 전투 현장에서의 병사들 간의 야만과 공포,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 적대진영 간의 살기와 증오 등등……전쟁의 비극성은 단지 전쟁 당시의 참극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쟁 후에까지 이어지는 그 심리적 외상(trauma)과 증오들은 결국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일 될 수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비교적 쉽게 끝났다. 하지만 그 비극과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임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만심이야말로 이 땅에 다시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화근일 수 있다.

IV. 전쟁과의 단절

1. 평화주의와 정당한 전쟁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는 바로 전쟁불가를 선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쟁불가의 가장 확고한 입장은 평화주의(pacifism)이다. 평화주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무력사용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전부 일치한다. 이들은 심지어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거부한다. 평화주의는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든, 일반적인 평화주의에 기한 것이든,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고, 그러한 신념은 법적으로 존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주의를 국법의 질서로 삼거나 시민적 의무로 부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평화주의는 ‘의무초과적인 도덕’일 뿐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내법적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듯이, 국제적으로도 침략에 맞서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금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상대국의 선전포고에 맞서 전쟁으로 대항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우리 헌법 제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방어전쟁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헌장도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자위(自衛)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유엔헌장 제51조). 이러한 규정들은 비록 철저한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이를 딱히 반평화적이라고 책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평화는 모든 전쟁을 배척하는 것에서 가장 높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전쟁을 거부하는 것에서 가장 강한 반전(反戰)의 힘이 나올 수도 있다. 즉 반드시 평화주의가 아니더라도 전쟁에 대한 확고한 규범적 태도만으로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이 그것이다. 정당한 전쟁론은 내용적으로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전쟁 종결의 정당성(jus post bellum)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 것만이 문제된다.

물론 정당한 전쟁론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가능케 하고 전쟁을 합리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범죄시한다. 전자의 측면을 생각하면,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과의 단절과는 거리가 먼 이론이 된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규범적 척도를 제공하여, 부당한 전쟁을 일상적인 국가의 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평화주의가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여 자칫 부당한 전쟁의 범죄성에 소홀하다면, 정당한 전쟁의 이론은 전쟁의 비극성에는 소홀할지 모르나, 부당한 전쟁의 범죄성은 확실하게 부각할 수 있다.

정당한 전쟁의 이론은 가톨릭의 철학의 전통을 주된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비토리아(Vitoria) 그리고 20세기의 교황들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전쟁론은 계속 엄격한 요건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에 따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된다.

1. 정당한 근거(just cause). 이는 공격에 대한 방어, 무고한 생명들의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뜻한다. 비토리아(Vitoria)는 그것을 침해(a wrong received)라는 범주로 포괄한다.
2.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 이는 위에서 말한 정당한 이유가 바로 전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분만 정당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도덕적인 엄격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합법적인 권위와 공개적 선언(proper authority and public declaration). 적정한 권위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국의 시민들 및 적국에 대한 공개적 선언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원래 중세의 제후 혹은 귀족가문들 간의 사투(私鬪; Fehde)를 제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후에는 내전(內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최후의 수단(last resort). 전쟁은 평화적 해결책이 더 이상 존재치 않을 경우 전쟁은 허용될 따름이다.
5. 성공의 개연성(probability of success). 전쟁으로 유효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실패하는 전쟁은 무고한 희생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6. 비례성(proportionality). 전쟁으로 야기될 피해가 전쟁 수행으로 얻어질 목적보다 크다면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그 문면 자체에서 아주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혹자는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정당한 전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전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즉 위와 같은 엄격한 정당한 전쟁의 이론은 사실상 전쟁의 개시를 불가하게 만드는 규범적 힘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미국의 선제방어전쟁론에 대한 평가

앞서 얘기하였듯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불사론은 무엇보다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쟁(preemption)론에서 연유한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가? 선제방어전쟁의 개념은 정당한 전쟁론의 just cause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정당한 전쟁론은 침략에 대한 방어만을 전쟁의 정당한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미국은 선제적 방어라는 개념으로 방어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선제적 방어에 대한 논의는 국제법상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웹스터의 공식이다. 1842년 캐롤라인 호(號) 사례에서 미 국무장관 웹스터는 “다른 수단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숙고해 볼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의 자기방어의 경우”에는 선제공격이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것은 국제법상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더 이상 숙고해 볼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이클 월저와 같은 이는 이를 단순히 반사작용(reflex)으로 본다. 월저는 그에 대해 보다 확장된 선제방어전쟁의 개념을 제출한다. 월저의 선제방어전쟁론은 개략적으로 말하여, 공리주의적 예방전쟁보다는 좁지만, 웹스터 식의 정당방위적 선제공격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목전에 닥친 공격의 순간이 아니라, 충분한 위협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선제방어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월저는 다음의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한다: 침략의 명백한 의도, 일정 정도의 적극적 준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경우 위협이 치명적으로 증대되는 상황.

월저의 Just and Unjust Wars (제2판 1992)는 오늘날 정당한 전쟁이론의 고전적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선제방어전쟁론은 최근에 선제공격을 천명한 부시 독트린에 따라 자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월저의 선제방어전쟁론은 고전적인 정당한 전쟁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국제법의 원칙, 즉 유엔헌장에서 규정한 방어전쟁의 개념에도 반한다(유엔헌장 제51조는 방어전쟁의 요건을 if an arms attack occurs라고 하여 단지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의 방어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그와 같은 월저의 선제방어전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마이클 월저의 정전론에 대한 소고”,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3). 거기서 필자는 월저의 이론은 결국 방어전쟁과 공격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국제관계를 자기보존의 태타적 권리가 지배하는 무정부적 전쟁상태로 되돌려 버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월저의 이론에 기대어 미국의 전쟁불사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많이 양보하여 월저의 이론을 수용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으며 또 한반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선제방어전쟁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는 월저 자신이 그것이 정당한 선제방어전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세계를 기만하면서 적대적 행위를 증대시켜왔다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미국 자신이 북한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핵과 안전을 교환하려는 입장을 취하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핵무장의 카드를 남겨놓는 노선을 취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1993-4년의 북핵위기 상황이나, 현재의 또 한번의 북핵위기 상황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개선 및 자신의 안전보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북한의 핵개발은 침략용이라기보다 방어용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냉전 해체에 즈음하여 미국의 부시 정부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한국의 노태우 정부도 1988년 7.7선언을 통하여 남북 협력과 교류의 시대를 천명하면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1991년 9월 마침내 남과 북은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바로 이어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팀스피리트 훈련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남과 북은 그 해 말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 정세는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쉘리그 해리슨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가능성이 승인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IAEA에 의한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중단한 것은 그 귀결이었다고 한다.(셸리그 해리슨, 321쪽).

그러나 그러한 해빙의 조짐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북미 그리고 남북의 전쟁의 불신과 적대의 골은 매우 깊었던 것이다. 북한의 자세는 자못 진지한 면이 있었으나, 미국과 한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변화를 다만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쯤으로 이해하였다. 1992년 한국전쟁 후의 최초의 북미간 고위급 정치회담이었던 김용순과 아놀드 캔터의 회담은 북한의 주한미군 용인 등 전향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로 인하여 성과가 없이 끝났고, 미국과 한국에는 정권교체에 접어들면서 모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북한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1993년 들어 갑자기 NPT 탈퇴라는 극단적인 반전을 맞게 된 데에는 한국과 미국의 강경노선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바로 위와 같은 북한의 외교협상파의 입지가 줄어들어가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부가 1993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전격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사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 대한 한미 강경파의 대응이라고 할 것이지만, 북한에게 팀스피리트 훈련은 가공할 핵전쟁준비로 인식되어 있고, 김일성 자신이 그것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공언해 온 것이었던 만큼 그 훈련의 재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주한 미 대사인 도널드 그레그는 그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발표가 자기 재임시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한편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는 한국의 군부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돈 오버도퍼 406쪽, 쉘리그 해리슨 326쪽), 이는 노태우 정부 말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보수진영의 강경노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안기부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발표에 즈음하여 이른바 이선실 간첩 사건이라는 대규모 간첩사건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한 회담도 당시 이동복 안기부 특보가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하여 결렬되었다.

한반도 핵위기를 불러온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이 1993년 재개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NPT 제10조에 규정된 탈퇴조항에 따라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최종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은 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반된다. IAEA의 2개 시설에 대한 핵사찰의 요구는 북조선을 무장해제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압살하려는 노골적인 우격다짐이다.”라고 하며 탈퇴선언을 하였던 것이다.(돈 오버도퍼 416쪽에서 인용)

NPT 탈퇴는 9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북한과 미국은 탈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1993년 6월 뉴욕공동성명에 합의한다. 이 뉴욕공동성명이 이후 1994년의 이른바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 주지하듯이 1993년의 북한 NPT탈퇴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1994년의 제네바합의의 타결로 일단 진정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제네바합의는 단지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포기하고 경수로를 제공받는 차원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및 관계개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1993년 6월의 북미공동성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양측은 핵확산금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 한반도 평화적 통일지지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리언 시걸, 345쪽에서 인용)

미국은 이 공동성명의 문언을 단지 유엔헌장 등의 문구로서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 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에서 최초로 합의된 성명이며, 북한이 NPT에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과의 모든 합의를 이 뉴욕공동성명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10월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는 크게 네 조항으로 되어있다. 사람들은 보통 그 기본합의의 제1조와 제4조, 즉 후연감속로를 대체하는 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는 것과 북한은 NPT에 잔류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에만 주목하는데,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간과될 수는 없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리언 시걸, 348쪽에서 인용)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미 강경과는 제네바합의가 체결된 후 북한을 계속 의심하며, 경수로 건설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으며, 북한도 다시 미사일 카드로서 미국을

압박하였다. 위태롭게 진행되던 북미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하여 탄력을 받아 마침내 2000년 역사적인 북미공동코뮤니케에 이르게 된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중대조치로서 두 나라는 그 어느 정부도 다른 쪽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두 나라는 1993년 6월11일부 북-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중략……

조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공동코뮤니케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과 미국이 이제 외교관계를 맺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의 또 하나의 축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상태를 종식하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올브라이트의 회고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여의치 않게 되자, 클린턴은 김정일위원장의 방미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만약 그 방미가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북미간에 체결된 주요한 합의들을 일별하였는데, 이를 보면 북한이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한 공격용이라는 주장이나, 북한의 핵물질이 다른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는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을 망각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월저가 상정하고 있는 확장된 선제방어전쟁의 범주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핵동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비록 북한이 미국을 침공할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의 공식입장도 자신들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한 시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즉 켈리 차관보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강석주 제1부상은 이를 매우 오만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느꼈으며, 그에 대하여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살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자위(自衛)의 권리에 대하여 얘기하였다는 것이다.

사태 발발 직후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통일부장관 정세현도 그와 같은 견해를 밝힌 적이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게도 그와 같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 러시아도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최근 6자회담 석상에서도 북한측은 기조연설에서 농축우라늄의 사실을 다시 부인하였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는 ‘제2의 금창리 사건’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영변의 원자로 말고 또 다른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개발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면, 제네바합의의 위반의 책임을 과연 전적으로 북한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그에 대하여도 회의적이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부시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보인 행태는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제네바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제 핵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포함시켰고, 김정일 정권의 전복도 시사하였다.

따라서 2001년 이후에 제네바합의의 위반 책임은 오히려 미국 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켈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개발은 부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북한이 이미 먼저 약속을 위반하고 평화의 가면을 쓴 채 핵무장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책임추궁은 강연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게 당장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단지 핵동결의 의무를 질 뿐이며, 핵에 대한 선택권은 완전히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충실치 않는다면 북한도 예비적으로 핵무장의 옵션을 여전히 살려둘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제네바합의는 그 체결 직후부터 이미 미국 및 한국의 강경파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북한은 그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고를 보냈었다. 1998년부터 1년여를 끈 이른바 금창리 핵의혹시설에 대한 미 강경파의 허황되기도 호전적인 호들갑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실제로 미 의회는 1998년 10월 21일, “99년 5월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중유공급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거부한 바도 있다. 미 강경파는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의회를 장악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미 공화당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합의를 그냥 둔 것이었을 뿐이다. 추가하자면 노틸러스 연구소의 크리스텐슨은 “선제방어적 태세(Freemptive Postur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2년 9/10월 제58권 제5호)에서 1998년 미 국방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세이무어 존슨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장거리 핵공격의 모의 군사연습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일찍이 제네바합의를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었다면, 북한도 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여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이 핵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것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들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공격용, 공산주의의 체제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은 북한 안보우려의 산물이며, 또 북한은 자신의 안보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이유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V. 평화를 위한 남북의 각성

이렇듯 미국의 전쟁위협은 부당한 것이며, 그에 대하여 단호히 반전(反戰)으로 맞서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방어전쟁론에 북한 역시 선제방어전쟁론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작전은 오래 전부터 ‘적 겨안기 전략’이었다고 한다. 재래식 전력을 휴전선에 집중 전진 배치한 것은 미국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북한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쪽도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위협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한다(셀리그 해리슨 313쪽).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양상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됐든 한국인들의 무고한 희생을 크게 초래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아무리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 즉 미군에 속해 있다고 하여도 북한의 그러한 대응은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북한의 피해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보이는 과민반응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호 피해의식의 상승작용이 곧 17세기 베이컨 이래로 ‘정당한 공포(just fear)’라는 예방전쟁 혹은 선제방어전쟁의 논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피해의식은 핵개발에 대한 집착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과 체제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또한 지나친 바가 있다. 북한은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이라크가 무시사찰단을 수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또 그것이 폐기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침략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약자로서 당연한 생존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6·25전쟁에서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자신은 평화에의 신념이 확고할지 모르나, 그것은 아직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교조적 인식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북한은 아직 6·25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탈냉전의 방식으로 대우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자신들의 방어를 위한 전쟁 자세가 정당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6·25전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레닌의 고전적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을 위한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도 예측된 민족의 자기결정에 의한 해방전쟁이어야지 그것이 외부에 의하여 주도되어선 정당한 전쟁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전쟁관은 계급지배의 폭력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그 혁명에 따르는 폭력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홀한 것이었다.

6·25 당시 북한 입장에서 남한 민중의 해방이 당위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를 위한 전쟁은 결코 정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의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은 남한 민중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기보다 오히려 참극을 안겨주었다. 6.25 당시에 순수한 공산주의자들이 품었을 사회주의의 열정은 결국 강도와 민족을 폭발시켜 버린 폭약이 되고 말았다. 전쟁은 오직 방어전쟁일 때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에

만 정당화될 수 있다. 단지 ‘민중 해방을 위한 전쟁’ 혹은 ‘혁명을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오늘날 아무리 그 명분이 고상하다고 하여도 ‘인권을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더 커다란 죄악일 뿐이다.

이점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남한의 보수계층도 전쟁에 대한 인식의 재점검이 요망된다. 과거 6.25 당시와는 거꾸로 지금은 우리 내부에서 ‘북한민중해방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논리의 구도는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의 주전론(主戰論)과 흡사하다. 비교해 보자.

더 이상 시간을 늦추다간 남한을 해방시킬 호기를 놓친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자유민주적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도당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구원해야 한다 — 잔인하고 부정한 독재 아래 도탄에 빠진 북한 민중들을 구원해야 한다.

치고 내려가면 남한의 민중들이 전국에서 봉기할 것이다 — 북한 정권을 타격하면 민중들의 봉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남한에도 아직 전쟁과의 단절이라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서두에서도 얘기하였듯이,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고, 큰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잠수함 침투 사건을 기화로 북한의 12곳에 응징 타격을 검토하는 등([중앙일보] 1996-10-14 가판, [한국일보] 1996-10-16에서 인용) 전쟁불사를 외쳤던 것도 그러한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일 따름이다.

VI. 맺음말

현재 북핵위기는 보다 진정되어 이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던 것에 비하면, 이번 10월 아펙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자틀 안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다시금 북미간 불가침 조약을 말하며, 다자틀에서의 안전 담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식에서 양자간의 합의보다 다자간의 합의가 보다 공신력이 있고, 또 내용면에서도 불가침에 관한 합의보다 예컨대 평화협정과 같은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더 포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은 반드시 불가침조약에만 집착할 일은 아니다. 파월의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행정부 서면보장-의회 결의-다자보장’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불가침조약에 대하여 금기시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북미 양자의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없는 북한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는 데에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가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침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관계개선에 대한 어떠한 의두도 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의 부담을 생각하면 훨씬 수월한 방안일 수도 있다.

미 하원의 군사부위원장인 커트 웰든 의원이 제시하는 단계적 불가침조약(1년의 한시적 불가침 조약 - 영구적 불가침조약)의 방안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 정부도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다. 남과 북이 전쟁과의 단절과 평화에의 지향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북미간의 관계의 진전만으로는 미흡한 것이다. 이는 1994년 제네바합의가 체결되고도 우리 김영삼 정부의 집요한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종 위협받고 또 더디게 진행된 점을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고 하는 민족적 다짐이자, 세계를 향한 전쟁단절의 메시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그 상징성에서는 놀라운 것이었으나,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99년에 있었던 것과 거의 같은 서해교전이 2002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서해의 해상경계선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에 한 번 열리고 나서는 이후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되는 마당에 남북 국방장관의 회담이 열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속히 우리의 요구에 응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에 힘쓸 일이다.

물론 남측 군부의 전향적 태도도 아쉽다. 2002년의 서해교전의 비극은 1999년의 교전을 이른바 ‘연평해전’으로 자축하고 승전비를 세우고 미군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하면서 전쟁을 고취하던 데에서 이미 배태된 것인지도 모른다. 1999년 제1차 교전이 났을 때, 그것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과 남북의 신뢰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면 2002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여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할 일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왜 1995년부터 새삼 주적을 명시하였어야 하였는지, 또 1990년대 후반에 어찌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전쟁의 단절과 평화의 신념만 투철하다면, 상호 증오와 오해는 결코 도를 넘지는 않을 것이며, 비록 빠르지는 않더라도 상호 윈-윈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더 낫다.”는 명제를 반복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토 론>

위기의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현단계(정태욱 교수)에 관한 토론자료

김주홍

울산대 정치외교학

1. 이 논문은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의미있는 규범이론을 동원하여 전반적으로 무난한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관하여 양비론적 시각을 취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료분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 논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첫째 16페이지로부터 18페이지에 이르는 부분의 전쟁불사론에 관한 설명에서, 이것이 마치 ‘부시’ 대통령의 현 정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쪽이 제기된 시점은 1994년이고 이는 미국 민주당 정권인 클린튼 행정부 당시의 일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시나리오 오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및 기술적 가용성에 관한 미국이라는 국가의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지 부시 개인이나 또는 공화당 정부이기 때문에 전쟁을 정책대안으로 동원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조건에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미국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전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예가 없으며,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이러한 논리가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문가적 견지에서 보면 위험한 주장이다. 둘째, 평화주의와 정전론에 있어서도 너무 규범적 해석에 역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관계에서 정의란 힘과 등떨어져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3.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너무 편향된 시각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페이지에서 “핵과 안전을 교환하려는 입장을 취하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핵무장의 카드를 남겨놓는 노선을 취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한다던가 같은 페이지에서 “북한의 자세는 자못 진지한 면이 있었으나, 미국과 한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변화를 다만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쯤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한 부분들은 핵무기가 협상용으로 개발될 수 있다든가 또는 미국과 남북한의 대북강경파들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가정을 저변에 깔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25페이지에서 “만약에 그(김정일의) 방미가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자세히 추적해보면 북한의 미사일포기 대가 요구가 최후의 걸림돌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김정일의 전략적 실수로 방미가 불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장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9페이지 넷째문단에서 “2002년의 서해교전의 비극은 1999년의 교전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북한이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않았던 남북한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남북한 관계는 그것이 남북한 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또 나아가서는 세계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